
환경규

2018년도 제4회 추경
사업설명서

자원순환과



[수도권매립지 폐기물 반입수수료] (P - 74)

□ 사업개요

- 사업기간 : 2018. 1. ~ 12. ○ 위 치 : 김포시 관내
- 사업규모 : 1,709톤/월
-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 : 생활폐기물중 불연성폐기물의 수도권매립지 반입처리로 생활폐기물의 안정적 처리
- 예산확보 실적 및 향후계획

(단위 : 천원)

구 분	총사업비 (A+B+F)	2017년 예산액(까지) (A)	2018년 예산액			2017년 예산 대비 증감 (B-A)	향후투자 (F)	비고
			계 (B=C+D+E)	본예산 (C)	1~3회 추경 (D)			
계		662,040	1,128,043	990,090		466,003		
국 비								
도 비								
시 비		662,040	1,128,043	990,090		466,003		
기 타								

□ 법적근거

근거법령	수도권매립지 반입수수료 및 분담금 부과 징수규정	제4조,9조
근거내용	반입수수료는 수도권매립지에 폐기물을 반입하는 기초자치단체의 장이 납부의무자가 된다. 반입수수료, 가산금 및 분담금을 부과·징수하려는 때에는 사장 또는 수입담당은 제2조제4호에 따라 납부 고지를 하여야 한다.	

□ 사업성격 및 사전절차 이행여부

사업성격		사전절차 이행여부						
신규□	계속■	중기지방 재정계획	투자심사	공유재산 관리계획	학술용역비 사전심사	정보화사업 사전협의	민간위탁 의회동의	출연·출자 의회의결
경상■	자본□	반영	비대상	비대상	비대상	비대상	비대상	비대상
자체■	보조□	2017.11월	-	-	-	-	-	-

□ 예산요구 필요성 및 사업내용

- 우리시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 중 불연성폐기물에 대한 수도권매립지 처리비용으로 생활폐기물의 처리를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기초예산으로
- 수도권매립지 폐기물 반입량이 6월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로 2018. 12월분 수수료 지급액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며 또한 11월, 12월 김장쓰레기 배출도 있어 더 많은 반입수수료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되어 이에 부족분 추정액을 추경에 반입코자 함.

□ 사업비 산출내역

(단위 : 천원)

사업명	통계목	사업내용 및 산출내역	비고
수도권매립지 폐기물 반입수수료	403-02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 위탁사업비	· 55,005원 * 1,709톤 * 12월 = 1,128,042,540원 = 1,128,043	

□ **사업 추진계획**

○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

- 수도권매립지 반입수수료 및 분담금 부과 징수규정 제4,9조
- 2019. 1 : 2018. 12월분 반입수수료 납부

□ **최근 3년 추진실적 및 결산현황**

○ 최근 3년 추진실적

구분	주요사업내용(추진실적)	비고
2016년	- 생활폐기물중 불연성생활폐기물 수도권매립, 반입량 : 16,388톤	
2017년	- 생활폐기물중 불연성생활폐기물 수도권매립, 반입량 : 13,070톤	
2018년	- 처리량 : 15,596톤(10월 현재)	진행중

○ 최근 3년 결산현황

(단위 : 천원)

연도	최종예산액	집행액	이월액	불용액	비고
2016년	690,040	577,556	60,000	52,484	
2017년	722,040	554,536	100,000	67,504	
2018년	1,128,043	988,043	140,000	-	4회 추경 편성후 0월 2019.1월 집행

□ **사업부서 및 담당자**

부서명	자원순환과	자원행정팀장 차용준	담당자	행정7급 김종원	전화	2764
-----	-------	------------	-----	----------	----	------

□ 사업 추진계획

○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

- 2018. 09. : 가을철 농촌 폐비닐 집중수거 계획수립
- 2018. 10. : 각 읍면동 수거관련 현수막 게시 등 홍보실시
- 2018. 11. : 19년도 농촌폐비닐수거보상금 국비 내시
- 2018. 01. ~ 2018. 12. : 농촌폐비닐수거보상금 매월 지급
- 2019. 01. ~ 2019. 12. : 예산집행(농촌폐비닐수거보상금 매월 지급)

□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결산현황

○ 최근 3년 추진실적

구분	주요사업내용(추진실적)	비고
2016년	- 농촌폐비닐(하이덴형HDPE검정·로덴형LDPE흰색) 수거량 838,540kg	
2017년	- 농촌폐비닐(하이덴형HDPE검정·로덴형LDPE흰색) 수거량 838,820kg	
2018년 (1월~9월)	- 농촌폐비닐(하이덴형HDPE검정·로덴형LDPE흰색) 수거량 722,310kg	

○ 최근 3년 결산현황

(단위 : 천원)

연도	최종예산액	집행액	이월액	불용액	비고
2016년	90,045	87,329	-	2,716	
2017년	87,381	87,228	-	153	
2018년	87,381	87,381	-	-	

□ 사업부서 및 담당자

부서명	자원순환과	자원재활용팀장 김기수	담당자	행정9급 한성민	전화	2777
-----	-------	-------------	-----	----------	----	------

2018년도 제4회 추경
사업설명서

공원녹지과



[8.26.~9.1. 집중호우 산림피해 복구] (P - 75)

□ 사업개요

- 사업기간 : 2018. 10.~ 12. ○ 위 치 : 관내 임야
- 사업규모 : 0.32ha
-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 : 집중호우로 인한 땅밀림 현상을 복구하고 초류종자 파종을 통한 빠른 녹화로 추가적인 피해 방지
- 예산확보 실적 및 향후계획

(단위 : 천원)

구 분	총사업비 (A+B+F)	2017년 예산액(까지) (A)	2018년 예산액			2017년 예산 대비 증감 (B-A)	향후투자 (F)	비고
			계 (B=C+D+E)	본예산 (C)	1~3회 추경 (D)			
계			38,218			38,218	38,218	
국 비			19,109			19,109	19,109	
도 비			7,644			7,644	7,644	
시 비			11,465			11,465	11,465	
기 타								

□ 법적근거

근거법령	자연재해대책법	제46조 제3항
근거내용	재해복구계획을 통보받은 즉시 재해복구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에 계상(計上)하여야 한다.	

□ 사업성격 및 사전절차 이행여부

사업성격		사전절차 이행여부						
신규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	계속 <input type="checkbox"/>	중기지방 재정계획	투자심사	공유재산 관리계획	학술용역비 사전심사	정보화사업 사전협의	민간위탁 의회동의	출연·출자 의회결
경상 <input type="checkbox"/>	자본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	비대상	비대상	비대상	비대상	비대상	비대상	비대상
자체 <input type="checkbox"/>	보조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	-	-	-	-	-	-	-

□ 예산요구 필요성 및 사업내용

- 피해를 복구하지 않을 경우 연속적으로 산사태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적기에 복구하여 추후 발생할 수 있는 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복구사업비 필요
- 행정안전부에서 교부된 재난복구액을 통한 산사태 피해지역 복구사업추진

□ 사업비 산출내역

사업명	통계목	사업내용 및 산출내역	비 고
8.26.~9.1. 집중호우 산림피해 복구비(산사태)	401-01 시설비	· 8.26.~9.1. 집중호우 산림피해 복구비 = 38,218	· 국비 50% · 도비 20% · 시비 30%

□ 사업부서 및 담당자

부서명	공원녹지과	산림보호팀장 조기영	담당자	녹지9급 고은혜	전화	2371
-----	-------	------------	-----	----------	----	------

[사방사업] [P - 75]

□ 사업개요

- 사업기간 : 2018. 1. ~ 12. ○ 위 치 : 관내 임야
- 사업규모 : 산지사방 0.4ha, 계류보전사업 0.1km, 사방댐1개소
-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 : 사방댐 및 산사태 예방시설을 정비하여 산림재해 예방
- 예산확보 실적 및 향후계획 (단위 : 천원)

구 분	총사업비 (A+B+F)	2017년 예산액(까지) (A)	2018년 예산액				2017년 예산 대비 증감 (B-A)	향후투자 (F)	비고
			계 (B=C+D+E)	본예산 (C)	1~3회 추경 (D)	4회 추경 요구액(E)			
계		28,819	35,835	28,047		7,788	7,016		
국 비							0		
도 비							0		
시 비		28,819	35,835	28,047		7,788	7,016		
기 타									

□ 법적근거

근거법령	사방사업법	제1조
근거내용	이 법은 국토의 황폐화를 방지하고 산사태 등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국토를 보전하기 위하여 사방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함으로써 공공이익의 증진과 산업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	

□ 사업성격 및 사전절차 이행여부

사업성격		사전절차 이행여부						
신규 <input type="checkbox"/>	계속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	중기지방 재정계획	투자심사	공유재산 관리계획	학술용역비 사전심사	정보화사업 사전협의	민간위탁 의회동의	출연·출자 의회결
경상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	자본 <input type="checkbox"/>	비대상	비대상	비대상	비대상	비대상	비대상	비대상
자체 <input type="checkbox"/>	보조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	-	-	-	-	-	-	-

□ 예산요구 필요성 및 사업내용

- 경기도 산림환경연구소에서 발주하는 사방사업비의 자치단체부담금이 증가하여, 예산 추가 확보하여 납부하고자 함

□ 사업비 산출내역

사업명	통계목	사업내용 및 산출내역	비 고
		합 계	= 7,788
사방사업)	308-07 자치단체간부담금	· 사방지점검 부담금	= 42
		· 사방댐점검 부담금	= -288
		· 산지사방 부담금	= -2,916
		· 계류보전 부담금	= -1,368
		· 사방댐 부담금	= 12,318
			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시비만 편성

□ 사업 추진계획

- 2018.12.21. : 자치단체간부담금 납부

□ 사업부서 및 담당자

부서명	공원녹지과	산림보호팀장 조기영	담당자	녹지9급 고은혜	전화	2371
-----	-------	------------	-----	----------	----	------

[산불방지대책 추진] [P - 75]

□ 사업개요

- 사업기간 : 2018. 10. 29. ~ 12. 15. ○ 위 치 : 관내임야
- 사업규모 : 산불진화용 등짐펌프 약 80개 구입, 산불예방 홍보물품 약 100개 구입
-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 : 행정안전부에서 교부된 산불방지대책비 재난안전특별교부세 활용으로 산불예방·진화에 만전을 기하여 시민의 생명 및 재산 보호
- 예산확보 실적 및 향후계획 (단위 : 천원)

구 분	총사업비 (A+B+F)	2017년 예산액(까지) (A)	2018년 예산액			2017년 예산 대비 증감 (B-A)	향후투자 (F)	비고
			계 (B=C+D+E)	본예산 (C)	1~3회 추경 (D)			
계			5,000			5,000		
국 비								성립전 예산편성
도 비			5,000			5,000		
시 비								
기 타								

□ 법적근거

근거법령	산림보호법	제30조 제1항, 제2항
근거내용	제30조제2항 지역산불관리기관의 장은 산불조심기간 동안 지역산불방지도별대책의 체계적 추진과 산불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마련하기 위하여 그 지역산불관리기관에 지역산불방지 대책본부를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.	

□ 사업성격 및 사전절차 이행여부

사업성격		사전절차 이행여부						
신규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	계속 <input type="checkbox"/>	중기지방 재정계획	투자심사	공유재산 관리계획	학술용역비 사전심사	정보화사업 사전협의	민간위탁 의회동의	출연·출자 의회의결
경상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	자본 <input type="checkbox"/>	비대상	비대상	비대상	비대상	비대상	비대상	비대상
자체 <input type="checkbox"/>	보조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	-	-	-	-	-	-	-

□ 예산요구 필요성 및 사업내용

- 산불예방 활동 및 산불진화장비 확보를 통하여 산불 발생 시 신속한 초동진화
- 공원녹지과-4512(18.10.30.)호 및 기획담당관-4402(18.11.3.)호로 성립전예산 집행 승인(산불방지대책 추진비)

□ 사업비 산출내역

(단위 : 천원)

사업명	통계목	사업내용 및 산출내역	비 고
		합 계	= 5,000
산불방지대책	201-01 사무관리비	· 일반 등짐펌프 : 50,000원 * 80개 · 산불조심 홍보물 : 10,000원 * 100개	= 4,000 = 1,000 · 도비100%

□ 사업부서 및 담당자

부서명	공원녹지과	산림보호팀장	담당자	녹지7급 조승진	전화	2373
-----	-------	--------	-----	----------	----	------

(FTA피해보전 직접 지불제) [P - 76]

□ 사업개요

- 사업기간 : 2018. 11. ~ 12. ○ 위 치 : 김포시 통진읍 마송리 175-1, 175-2, 175-4번지
- 사업규모 : 호두 1개소(2,610㎡)
-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 :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으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임업인들을 효과적으로 지원하여 임업인들의 경쟁력을 높임

○ 예산확보 실적 및 향후계획

(단위 : 천원)

구 분	총사업비 (A+B+F)	2017년 예산액(까지) (A)	2018년 예산액			2017년 예산 대비 증감 (B-A)	향후투자 (F)	비고
			계 (B=C+D+E)	본예산 (C)	1~3회 추경 (D)			
계			267			267		
국 비			267			267		
도 비								
시 비								
기 타								

□ 법적근거

근거법령	자유무역협정(FTA)농어업법	제5조
근거내용	정부는 협정의 이행으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농어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보조 또는 융자로 특별 지원할 수 있다.	

□ 사업성격 및 사전절차 이행여부

사업성격		사전절차 이행여부						
신규■	계속□	중기지방 재정계획	투자심사	공유재산 관리계획	학술용역비 사전심사	정보화사업 사전협의	민간위탁 의회동의	출연·출자 의회의결
경상■	자본□	비대상	비대상	비대상	비대상	비대상	비대상	비대상
자체□	보조■	-	-	-	-	-	-	-

□ 예산요구 필요성 및 사업내용

- 2018년 FTA 직접피해보전사업 지급대상자 선정 및 자금배정이 됨에 따라, 추가 예산 확보 필요
- FTA체결로 가격하락의 피해를 입은 임업인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피해보전직접직불금을 지원하고, 임업인의 원활한 구조조정과 경영안정을 도모

□ 사업비 산출내역

사업명	통계목	사업내용 및 산출내역	비 고
FTA피해보전직 불제(임업)	301-11 기타보상금	. FTA 피해보전직불제 지원금 = 267	. 국비100%

□ 사업부서 및 담당자

부서명	공원녹지과	산림보호팀장 조기영	담당자	녹지9급 고은혜	전화	2371
-----	-------	------------	-----	----------	----	------

□ **최근 3년 추진실적 및 결산현황**

○ **최근3년 추진실적**

구분	주요사업내용(추진실적)	비고
2018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가로수 실태조사 등 도시녹지자원조사 및 사업실행 이력 등 정보 구축·관리 - 가로수·도시숲·쌈지공원 등 병해충 등 피해 조사 및 방제, 피해목·고사목 정리, 가지치기 - 도시녹화사업 추진 지원 	2018.4. 무기계약직 전환

○ **최근3년 결산현황**

(단위 : 천 원)

연도	최종예산액	집행액	이월액	불용액	비고
2018년	38,977	35,300	-	3,677	2018.4. 무기계약직 전환

□ **사업부서 및 담당자**

부서명	공원녹지과	도시녹화팀장	여민구	담당자	녹지8급 김지연	전화	2367
-----	-------	--------	-----	-----	----------	----	------

2018년도 제4회 추경
사업설명서

공원관리과



[결포중앙공원 노후시설 보수사업] (P - 77)

□ 사업개요

- 사업기간 : 2018. 12. ~ 2019. 9. ○ 위 치 : 결포동 1553(결포중앙공원)
- 사업규모 : 400m²
-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 : 결포중앙공원 숲속공간으로 연결되는 노후 데크산책로를 보수하여 이용자 안전 제고
- 예산확보 실적 및 향후계획

(단위 : 천원)

구 분	총사업비 (A+B+F)	2017년 예산액(까지) (A)	2018년 예산액				2017년 예산 대비 증감 (B-A)	향후투자 (F)	비고
			계 (B=C+D+E)	본예산 (C)	1~3회 추경 (D)	4회 추경 요구액(E)			
계	400,000		400,000			400,000	400,000		
국 비									
도 비									
시 비	400,000		400,000			400,000	400,000	특별교부세	
기 타									

□ 법적근거

근거법령	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	제10조 제1항
근거내용	공원시설은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기준에 따라 설치·관리되어야 한다.	

□ 사업성격 및 사전절차 이행여부

사업성격		사전절차 이행여부						
신규■	계속□	중기지방 재정계획	투자심사	공유재산 관리계획	학술용역비 사전심사	정보화사업 사전협의	민간위탁 의회동의	출연·출자 의회의결
경상□	자본■	반영	비대상	비대상	비대상	비대상	비대상	비대상
자체□	보조■	2018.11월	-	-	-	-	-	-

□ 예산요구 필요성 및 사업내용

- 결포공원의 산지와 평지를 연결하는 데크산책로가 노후되어 지속적인 유지관리에도 불구하고 부속, 파손 등이 심해 안전사고 발생에 취약한 실정임
- 결포공원은 매년 대규모행사가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으며, 주변으로 결포3지구 등 도시개발사업이 진행되고 있어 이용시민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조속한 시일에 시설 보수를 통해 공원이용 시민들의 안전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

□ 사업비 산출내역

(단위 : 천원)

사업명	통계목	사업내용 및 산출내역	비 고
결포중앙공원 노후시설 보수사업	401-01 시설비	· 1,000,000원 * 400m ² = 400,000	

□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결산현황

- 최근3년 추진실적 : 해당없음
- 최근3년 결산현황 : 해당없음

□ 위치도 및 현장사진

위치도	
현장사진 (칼라)	

□ 사업부서 및 담당자

담당	공원관리1팀장 오재일	담당자	녹지9급 강승구	전화	5634
----	-------------	-----	----------	----	------

□ **최근 3년 추진실적 및 결산현황**

- 최근3년 추진실적 : 해당없음
- 최근3년 결산현황 : 해당없음

□ **위치도 및 현장사진**

위치도	
현장사진 (칼라)	

□ **사업부서 및 담당자**

담당	공원관리2팀장 정영섭	담당자	녹지9급 최성은	전화	5641
----	-------------	-----	----------	----	------

회 통 규

2018년도 제4회 추경
사업설명서

교통과



[특별교통수단 위탁운영비] (P - 81)

□ 사업개요

- 사업기간 : 2018. 12. ○ 위 치 : 김포시 전 지역
- 사업량 : 김포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1개소
-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 :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 및 이동편의 증진
- 예산확보 실적 및 향후계획

(단위 : 천원)

구 분	총사업비 (A+B+F)	2017년 예산액(까지) (A)	2018년 예산액				2017년 예산 대비 증감 (B-A)	향후투자 (F)	비고
			계 (B=C+D+E)	본예산 (C)	1~3회 추경 (D)	4회 추경 요구액(E)			
계		1,670,170	2,161,276	1,980,000	96,661	84,615	491,106		
국 비									
도 비			396,000	396,000					
시 비			1,765,276	1,584,000	96,661	84,615			
기 타									

□ 법적근거

근거법령	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	제16조
근거내용	① 시장이나 군수는 이동에 심한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대수 이상의 특별교통수단을 운영하여야 한다. ② 시장이나 군수는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려는 교통약자와 특별교통수단을 운영하는 자를 통신수단 등을 통하여 연결하여 주는 이동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.	

□ 사업성격 및 사전절차 이행여부

사업성격		사전절차 이행여부						
신규□	계속■	중기지방 재정계획	투자심사	공유재산 관리계획	학술용역비 사전심사	정보화사업 사전협의	민간위탁 의회동의	출연·출자 의회의결
경상■	자본■	반영	비대상	비대상	비대상	비대상	비대상	비대상
자체□	보조■	2018.10월	-	-	-	-	-	-

□ 예산요구 필요성 및 사업내용

- 대중교통수단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, 고령자 등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 및 이동편의 제공
- 김포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(김포시 시설관리공단 위탁)의 인건비 및 운영비를 전출금으로 편성
- 2018년 무기계약근로자 임금 단체 협상에 따른 인상률 반영

□ 사업비 산출내역

사업명	통계목	사업내용 및 산출내역(자세하게 작성)	비고
공 통		= 84,615,000	
특별교통수단 위탁 운영비	309-01 공사공단경상전출금	·인력운영비 인상분 = 84,615,000	

□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결산현황

○ 최근3년 추진실적

구분	주요사업내용(추진실적)	비고
2016년	- 운행건수 : 22,672건 - 이용객 : 38,222명	
2017년	- 운행건수 : 35,642건 - 이용객 : 58,426명	
2018년	- 운행건수 : 38,203건 - 이용객 : 56,514명	2018.10월

○ 최근3년 결산현황

(단위 : 천원)

연도	최종예산액	집행액	이월액	불용액	비고
2016년	165,467	134,434	0	31,032	
2017년	1,670,170	1,579,067	0	121,103	
2018년	2,076,661	1,489,492	0	101,026	

※ 2017년 시비 예산이 급격하게 증가한 이유는 2016년까지 정책예산담당관실에서 편성하였던 김포도시공사 직원의 인력운영비를 교통행정과에서 편성하였기 때문임

□ 사업부서 및 담당자

부서명	교통과	교통정책팀장 박경애	담당자	행정6급 박상우	전화	2464
-----	-----	------------	-----	----------	----	------

□ 사업비 산출내역

사업명	통계목	사업내용 및 산출내역(자세하게 작성)	비고
공 통		= 93,950,000	
공영주차장 확충 및 유지관리	공사·공단경상전출금 309-01	.인력운영비 인상분 = 93,950,000	

□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결산현황

○ 최근3년 추진실적

구분	주요사업내용(추진실적)	비고
2016년	공영주차장 위탁 운영	
2017년	공영주차장 위탁 운영	
2018년	공영주차장 위탁 운영	

○ 최근3년 결산현황

(단위 : 천원)

연도	최종예산액	집행액	이월액	불용액	비고
2016년	1,394,184	1,353,067	-	41,117	-
2017년	1,597,270	1,487,178	-	110,091	-
2018년	1,974,138	1,974,138	-	-	-

□ 사업부서 및 담당자

부서명	교통과	주차시설팀장 박일용	담당자	시설7급 이시구	전화	2330
-----	-----	------------	-----	----------	----	------

□ 사업비 산출내역

사업명	통계목	사업내용 및 산출내역(자세하게 작성)	비고
공 통		=	19,827,000
운양환승센터 조성사업	401-01 시설비	.설계비 : 1식 × 1,000,000천원/식 = .감리비 : 1식 × 400,000천원/식 = .공사비 : 19,280㎡ × 955천원/㎡ =	1,000,000 400,000 18,427,000

□ 투자사업 추진계획

○ 투자사업 공정별 내역

(단위 : 천원)

구 분	총사업비 (A+B+F)	기투자 (A)	2018 예산액				향후투자 (F)	비고	
			계 (B=C+D+E)	본예산 (C)	1~2회 추경 (D)	4회 추경 요구액(E)			
계	19,827,000	-	8,200,000	1,000,000	6,700,000	500,000	11,627,000		
공 정 별	설계비	1,000,000	-	1,000,000	1,000,000				
	보상비								
	공사비	18,427,000	-	7,200,000		6,700,000	500,000	11,227,000	
	감리비	400,000	-					400,000	
	부대비								

○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(법적절차 이행상황부터 준공일 까지 자세히 작성)

- 2017.11. : 지방재정투자심사
- 2017.12. : 공유재산관리계획 의회 심의
- 2018.03. : 실시설계 용역 심사
- 2018.05. ~ 2019.11. : 실시설계 착수 및 준공
- 2019.12. ~ 2020.11. : 공사 착공 및 준공

□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결산현황

○ 최근3년 추진실적

구분	주요사업내용(추진실적)	비고
2016년	-	
2017년	-	
2018년	운양환승센터 조성 기본·실시설계 용역	

○ 최근3년 결산현황

(단위 : 천원)

연도	최종예산액	집행액	이월액	불용액	비고
2016년	-	-	-	-	-
2017년	-	-	-	-	-
2018년	8,200,000	354,000	7,846,000	-	계속비

□ 위치도 및 현장사진(해당없을시 미제출)

<p>위치도 10,000 :1 이상 (칼라)</p>	
<p>현장사진 (칼라)</p>	

□ 사업부서 및 담당자

부서명	교통과	주차시설팀장 박일용	담당자	시설7급 이시구	전화	2330
-----	-----	------------	-----	----------	----	------

2018년도 제4회 추경
사업설명서

안전총괄과



[지진 옥외대피장소 안내표지판 정비사업] (P - 83)

□ 사업개요

- 사업기간 : 2018. 11월 ~ 12월 ○ 위 치 : 김포시 52개소
- 사업량 : 지진 옥외 대피장소 표지판 영문표기 변경 52개
-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 : 기존의 영문 표기를 변경하여 국내에 있는 외국인들에게 효과적으로 지진 옥외 대피장소로 안내할 수 있음.
- 예산확보 실적 및 향후계획

(단위 : 천원)

구 분	총사업비 (A+B+F)	2017년 예산액(까지) (A)	2018년 예산액			2017년 예산 대비 증감 (B-A)	향후투자 (F)	비고
			계 (B=C+D+E)	본예산 (C)	1~3회 추경 (D)			
계			2,002			2,002		
국 비								
도 비			2,002			2,002		
시 비								
기 타								

□ 법적근거

근거법령	지진·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	제9조의3
근거내용	① 법 제10조의2제4항에 따른 지진해일 대피 관련 시설 및 준비태세에 대한 점검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. 2. 표지판의 설치 및 관리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·도지사등에게 그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. 이 경우 보완 요구를 받은 시·도지사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.	

□ 사전절차 이행여부

사업성격		사전절차 이행여부						
신규■	계속□	중기지방 재정계획	투자심사	공유재산 관리계획	학술용역비 사전심사	정보화사업 사전협의	민간위탁 의회동의	출연·출자 의회의결
경상□	자본■	비대상	비대상	비대상	비대상	비대상	비대상	비대상
자체□	보조■	-	-	-	-	-	-	-

□ 예산요구 필요성

- 도비 보조금 교부결정 통지[행정안전부 재난관리정책과-4442(2018.10.26.)호 및 경기도 자연재난과 -3560(2018.11.13.)호]
- 지진옥외대피장소의 안내표지판 영문표기가 적절치 못하여 국내 외국인들에게 혼란을 줄 수 있으므로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영문표기 변경 사업이 필요

□ **사업비 산출내역**

(단위 : 천원)

사업명	통계목	사업내용 및 산출내역	비고
지진 옥외 대피장소 안내표지판 정비사업	401-01 시설비	○ 안내표지판 영문표기 변경 : 38,500원×52개 = 2,002	

□ **사업 추진계획 (시설비 등 투자사업 외)**

-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(계획수립, 사업추진절차 및 내용 자세히 작성)
 - 2017.12월 : 지진 옥외대피소 안내표지판 설치(39개)
 - 2018.07월 : 지진 옥외대피소 안내표지판 설치(13개)
 - 2018.11월 ~ 12월 : 지진 옥외대피장소 안내표지판 정비사업 추진

□ **사업부서 및 담당자**

부서명	안전총괄과	자연재난팀장 전익홍	담당자	시설9급 안재현	전화	2917
-----	-------	------------	-----	----------	----	------

[8.26.~9.1. 재해로 인한 재산피해 복구비] [P - 83]

□ 사업개요

- 사업기간 : 2018. 11월 ~ 12월
- 사업량 : 주택침수 153건, 농작물 및 농업시설 54건
-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 : 각종 자연재난으로 인한 사유재산피해 발생 시 재난지원금 지급으로 피해 주민들의 긴급생활 지원
- 예산확보 실적 및 향후계획

(단위 : 천원)

구분	2017년 최종예산액 (A)	2018년 예산액			2017년 예산 대비 증감 (B-A)	비고
		계 (B=C+D+E)	본예산 (C)	1~3회 추경 (D)		
계		183,023			183,023	
국비		89,750			89,750	
도비		35,900			35,900	
시비		57,373			57,373	

□ 법적근거

근거법령	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에 관한 규정	제4조 제1항
근거내용	재난구호 및 재난복구 비용 등에 대하여 국고나 지방비 등을 지원하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. 1. 이재민 구호를 위한 다음 각 목의 지원 가. 주택이 소파(小破, 지진피해에 의한 파손에 한정한다. 이하 같다)·반파(半破)·전파(全破)되어 사용이 불가능하거나 침수·유실된 사람의 생계안정을 위한 구호비 지원 나. 주생계 수단인 농업·어업·임업·염생산업에 재해를 입은 사람의 생계안정을 위한 생계 지원	

□ 사업성격 및 사전절차 이행여부

사업성격		사전절차 이행여부						
신규■	계속□	중기지방 재정계획	투자심사	공유재산 관리계획	학술용역비 사전심사	정보화사업 사전협의	민간위탁 의회동의	출연·출자 의회의결
경상■	자본□	비대상	비대상	비대상	비대상	비대상	비대상	비대상
자체□	보조■	-	-	-	-	-	-	-

□ 예산요구 필요성 및 사업내용

- 재산피해복구 사업 추진을 위한 국비 보조금 교부결정 통지[행정안전부 복구지원과-3166 (2018.10.17.)호] 및 도비 보조금 교부결정 통지[경기도 자연재난과-16652(2018.9.28.)호]

□ 사업비 산출내역

(단위 : 천원)

사업명	통계목	사업내용 및 산출내역	비고
8.26.~9.1. 재해로 인한 재산피해 복구비	302-02 민간인재해및복구 활동보상금	○ 주택침수 1,000,000원×153건 + 농작물 및 농업시설 26,500,000원 × 1식 = 183,023 + 재난지수300미만 자체지원비 3,522,930원 × 1식	

□ 사업 추진계획 (시설비 등 투자사업 외)

-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
 - 2018.09월 ~ 10월 : 재난지원금 선지급 완료
 - 2018.12월 : 선지급금 과목경정

□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결산현황

○ 최근3년 추진실적

구분	주요사업내용(추진실적)	비고
2018년	- 주택침수 1,000,000원×153건 /농작물 및 농업시설 26,500,000원 × 1식(20건) - 재난지수 300미만 경미한피해 지원금 3,522,930원 × 1식(34건)	

○ 최근3년 결산현황

(단위 : 천원)

연도	최종예산액	집행액(예정)	이월액	불용액	비고
2018년	183,023	180,023	-	3,000	

□ 사업부서 및 담당자

부서명	안전총괄과	자연재난팀장 전익홍	담당자	공업9급 고경형	전화	2915
-----	-------	------------	-----	----------	----	------

[국가하천 유지보수] [P - 84]

□ 사업개요

- 사업기간 : 2018. 11월 ~ 2019. 6월 ○ 위 치 : 김포대교 등
- 사업량 : 위험 안내 표지판 등 1식
-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 : 신곡수중보 위험 안내 표지판 설치로 안전사고 예방
- 예산확보 실적 및 향후계획

(단위 : 천원)

구 분	총사업비 (A+B+F)	2017년 예산액(까지) (A)	2018년 예산액			2017년 예산 대비 증감 (B-A)	향후투자 (F)	비고
			계 (B=C+D+E)	본예산 (C)	1~3회 추경 (D)			
계		97,000	165,000		85,000	80,000	68,000	
국 비		97,000	165,000		85,000	80,000	68,000	
도 비								
시 비								
기 타								

□ 법적근거

근거법령	하천법	제3조(국가등의 책무)
근거내용	① 국가는 하천에 대한 효율적인 보전·관리를 위하여 하천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합리적인 시책을 마련할 책무를 진다. ②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시책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관할구역의 특성에 맞는 계획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	

□ 사업성격 및 사전절차 이행여부

사업성격		사전절차 이행여부						
		중기지방 채정계획	투자심사	공유재산 관리계획	학술용역비 사전심사	정보화사업 사전협의	민간위탁 의회동의	출연·출자 의회의결
신규□	계속■	비대상	비대상	비대상	비대상	비대상	비대상	비대상
경상□	자본■	-	-	-	-	-	-	-
자체□	보조■	-	-	-	-	-	-	-

□ 예산요구 필요성

- 국고 보조금 자금교부 통지[경기도하천과-17478호(2018.10.29.)]
- 신곡수중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김포대교에 위험 안내 표지판등을 설치

□ 사업비 산출내역

(단위 : 천원)

사업명	통계목	사업내용 및 산출내역	비고
국가하천 유지보수	401-01 시설비	○ 위험안내표지판 설치 용역비 : 15,876,000원 ○ 위험안내표지판 설치비 : 64,124,000원 = 80,000	

□ 투자사업 추진계획

○ 투자사업 공정별 내역

(단위 : 천원)

구분	총사업비 (A+B+F)	기투자 (A)	2018 예산액				이월 요구액	향후투자 (F)	비고
			계 (B=C+D+E)	본예산 (C)	1~3회 추경 (D)	4회 추경 요구액(E)			
계		97,000	165,000		85,000	80,000	80,000		
공 정 별	설계비								
	보상비								
	공사비	97,000	165,000		85,000	80,000	80,000		
	감리비								
	부대비								

○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

- 2018.10월 : 국고보조금 자금교부 결정 및 성립전 예산 편성 요청
- 2018.11월 : 김포대교 안전표지판 설치공사 실시설계용역 착수
- 2019. 6월 : 설치 완료

□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결산현황

○ 최근3년 추진실적

구분	주요사업내용(추진실적)	비고
2017년	· 굴포천 제방도로 포장공사(1차) · 굴포천 제방도로 포장공사(2차) · 굴포천 하천표지판 설치공사 · 굴포천 수목제거 공사	
2018년	· 굴포천 제방도로 포장공사 · 한강둔치 친수시설 정비공사	

○ 최근3년 결산현황

(단위 : 천원)

연도	최종예산액	집행액	이월액	불용액	비고
2017년	97,000	93,412	-	3,588	
2018년	165,000	70,270	80,000	0	

□ 위치도 및 현장사진

<p>위치도 10,000 :1 이상 (칼라)</p>	
---	---

□ 사업부서 및 담당자

부서명	안전총괄과	하천관리팀장 임영순	담당자	시설7급 최영문	전화	2921
-----	-------	------------	-----	----------	----	------

[국민 참여 민방위의 날 훈련경비] [P - 84]

□ 사업개요

- 사업기간 : 2018. 11월 ~ 12월 ○ 위 치 : 김포시
- 사업량 : 연 3회
-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 : 민방위·재난대응 훈련을 통해 위기대응능력을 강화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보호
- 예산확보 실적 및 향후계획

(단위 : 천원)

구 분	총사업비 (A+B+F)	2017년 예산액(까지) (A)	2018년 예산액			2017년 예산 대비 증감 (B-A)	향후투자 (F)	비고
			계 (B=C+D+E)	본예산 (C)	1~3회 추경 (D)			
계		1,900	2,850	1,900		950		
국 비		570	570	570				
도 비		399	1,349	399		950	950	
시 비		931	931	931				
기 타								

□ 법적근거

근거법령	민방위기본법	제25조 제1항~제2항
근거내용	중앙관서의 장, 시·도지사,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훈련에 참여한 공공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.	

□ 사업성격 및 사전절차 이행여부

사업성격		사전절차 이행여부						
신규□	계속■	중기지방 재정계획	투자심사	공유재산 관리계획	학술용역비 사전심사	정보화사업 사전협의	민간위탁 의회동의	출연·출자 의회의결
경상■	자본□	비대상	비대상	비대상	비대상	비대상	비대상	비대상
자체□	보조■	-	-	-	-	-	-	-

□ 예산요구 필요성 및 사업내용

- 민방위 비상사태 및 재난대응 실제훈련을 위한 민·관·군·경의 체계적인 훈련도모

□ 사업비 산출내역

(단위 : 천원)

사업명	통계목	사업내용 및 산출내역(자세하게 작성)	비고
국민참여 민방위의 날 훈련경비	201-01 사무관리비	. 현수막 제작 : 50,000원 × 3종 × 3회	= 450
		. 훈련소모품 구입(연막탄, 크랙커, 유도봉, 호각, 메가폰 등)	= 500

□ **사업 추진계획 (시설비 등 투자사업 외)**

-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
 - 민방공 대피훈련(3월, 8월)
 - 지역특성화 재난대비훈련(4월, 10월)
 - 전국단위 재난대비훈련(5월)
 - 제409차 민방위의날 전국 화재대피훈련(11월)

□ **최근 3년 추진실적 및 결산현황**

○ **최근3년 추진실적**

구분	주요사업내용(추진실적)	비고
2016년	401차 : 5.16 민방공 대피훈련 402차 : 8.24 을지연습 연계 민방공 대피훈련 403차 : 10.19 지진대피훈련	
2017년	3.23 : 지역특성화 훈련(화생방) 404차 : 8.23 을지연습 연계 민방공 대피훈련 9.15 : 지역특성화 훈련(위험권역 주민대피) 405차 : 11.1 지역특성화 훈련(지진대피)	
2018년	406차 : 3.21 전국화재대피훈련 407차 : 5.16 전국지진대피훈련(안전한국훈련연계) 408차 : 9.12 전국지진대피훈련 409차 : 11.27 화재대피훈련(예정)	

○ **최근3년 결산현황**

(단위 : 천원)

연도	최종예산액	집행액	이월액	불용액	비고
2016년	2,490	2,490	-	0	
2017년	1,900	1,900	-	0	
2018년	2,850	2,850	-	0	

□ **사업부서 및 담당자**

부서명	안전총괄과	민방위비상대비팀장 권홍택	담당자	행정7급 나태웅	전화	2361
-----	-------	---------------	-----	----------	----	------

2018년도 제4회 추경
사업설명서

도로건설과



[풍무동 현대모자 인문 도시계획도면중-15호선] 개설공사 (P - 85)

□ 사업개요

- 사업기간 : 2018. ~ 2019. ○ 위 치 : 김포시 풍무동 761번지 일원
- 사업량 : L=0.43km, B=20m(4차로)
-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 : 도로망 확충을 통한 지역간 균형발전 도모, 도시계획 도로개설을 통한 교통체증 해소 및 지역 균형발전
- 예산확보 실적 및 향후계획

(단위 : 천원)

구 분	총사업비 (A+B+F)	2017년 예산액(까지) (A)	2018년 예산액			2017년 예산 대비 증감 (B-A)	향후투자 (F)	비고
			계 (B=C+D+E)	본예산 (C)	1~3회 추경 (D)			
계	2,600,000		2,600,000		1,800,000	800,000	2,600,000	
국 비								
도 비								
시 비	1,800,000		2,600,000		1,800,000	800,000	2,600,000	특조금
기 타								

□ 법적근거

근거법령	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	제88조 및 제96조
근거내용	제88조 도로개설관련 실시계획 인가 제96조 사업부지 보상관련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준용	

□ 사업성격 및 사전절차 이행여부

사업성격		사전절차 이행여부						
신규□	계속■	중기지방 재정계획	투자심사	공유재산 관리계획	학술용역비 사전심사	정보화사업 사전협의	민간위탁 의회동의	출연·출자 의회의결
경상□	자본■	반영	조건부추진	비대상	비대상	비대상	비대상	비대상
자체■	보조□	2012.09월	2013.11월	-	-	-	-	-

□ 예산요구 필요성

- 도시계획도로 확장을 신속히 요구하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.

□ 사업비 산출내역

(단위 : 천원)

편성목	통계목	사업내용 및 산출내역	비 고
김포도시계획도로(중1-15호선) 개설공사	401-01 시설비	. 도로개설 L=0.43km, B=20m(4차로) 공사비 = 800,000	

□ 사업 추진계획

○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

- 2007. 09. : 도시계획시설 결정[김포시 고시 제2007-114호]
- 2012. 09. : 실시설계용역
- 2015. 09. : 실시계획인가[김포시 고시 제2015-119호]
- 2018. 10. : 공사착공 및 보상착수
- 2019. 12. : 공사준공

□ 투자사업 추진계획

○ 투자사업 공정별 내역

(단위 : 천원)

구 분	총사업비 (A+B+F)	기투자 (A)	2018 예산액				향후투자 (F)	비고
			계 (B=C+D+E)	본예산 (C)	1~3회 추경 (D)	4회 추경 요구액(E)		
계	2,600,000		2,600,000		1,800,000	800,000		
공 정 별	설계비							
	보상비	1,000,000	1,000,000		1,000,000			
	공사비	1,600,000	1,600,000		800,000	800,000		
	감리비							
	부대비							

○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

- 2012. 09. : 실시설계용역
- 2018. 10. : 공사착공 및 보상착수
- 2019. 12. : 공사준공

□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결산현황

○ 최근3년 추진실적

구분	주요사업내용(추진실적)	비고
2016년	-	
2017년	-	
2018년	- 10월 공사착공, 11월 보상시행	

○ 최근3년 결산현황

(단위 : 천원)

연도	최종예산액	집행액	이월액	불용액	비고
2016년	-	-	-	-	
2017년	-	-	-	-	
2018년	1,800,000	303,500	1,496,500	-	보상일부포함

□ 위치도 및 현장사진

위치도
10,000 : 1
이상
(칼라)



□ 사업부서 및 담당자

부서명	도로건설과	도로건설팀장 김영대	담당자	시설7급 최호선	전화	2437
-----	-------	------------	-----	----------	----	------

도 시 국

2018년도 제4회 추경
사업설명서

도시관리과



□ 사업비 산출내역

(단위 : 천원)

구분	총사업비 (A+B+E+F)	2017년 예산액(까지) (A)	2018년 예산액			향후투자 (F)	비고
			계 (B=C+D)	본예산 (C)	4회 추경 (D)		
계	7,839,000	536,290	567,000	1,720,000	-1,153,000	6,735,710	
공 정 별	설계비	536,290	536,290	-	-	-	-
	보상비	90,670	-	90,670	90,670	-	-
	공사비	6,820,040	-	476,330	1,549,330	-1,073,000	6,343,710
	감리비	392,000	-	-	80,000	-80,000	392,000
	부대비	-	-	-	-	-	-

□ 사업 추진계획 (시설비 등 투자사업 외)

- 2014. 11. : 산업단지 공업용수도 건설지원 자금교부
- 2016. 4. : 실시설계용역 계약심사(경기도)
- 2016. 6. : 실시설계용역 발주 및 계약
- 2016. 12. : 실시설계용역 준공 및 도시관리계획 변경 신청
- 2018. 2월, 5. : 2018년 1·2차 국비보조금 교부(567,000천원)
- 2018. 6. : 도시계획시설결정 도시계획위원회 개최(원안가결)
- 2019. 하반기 : 공업용수도 도시계획시설 실시승인 및 보상착수
- 2020. 하반기 공사준공

□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결산현황

○ 최근3년 추진실적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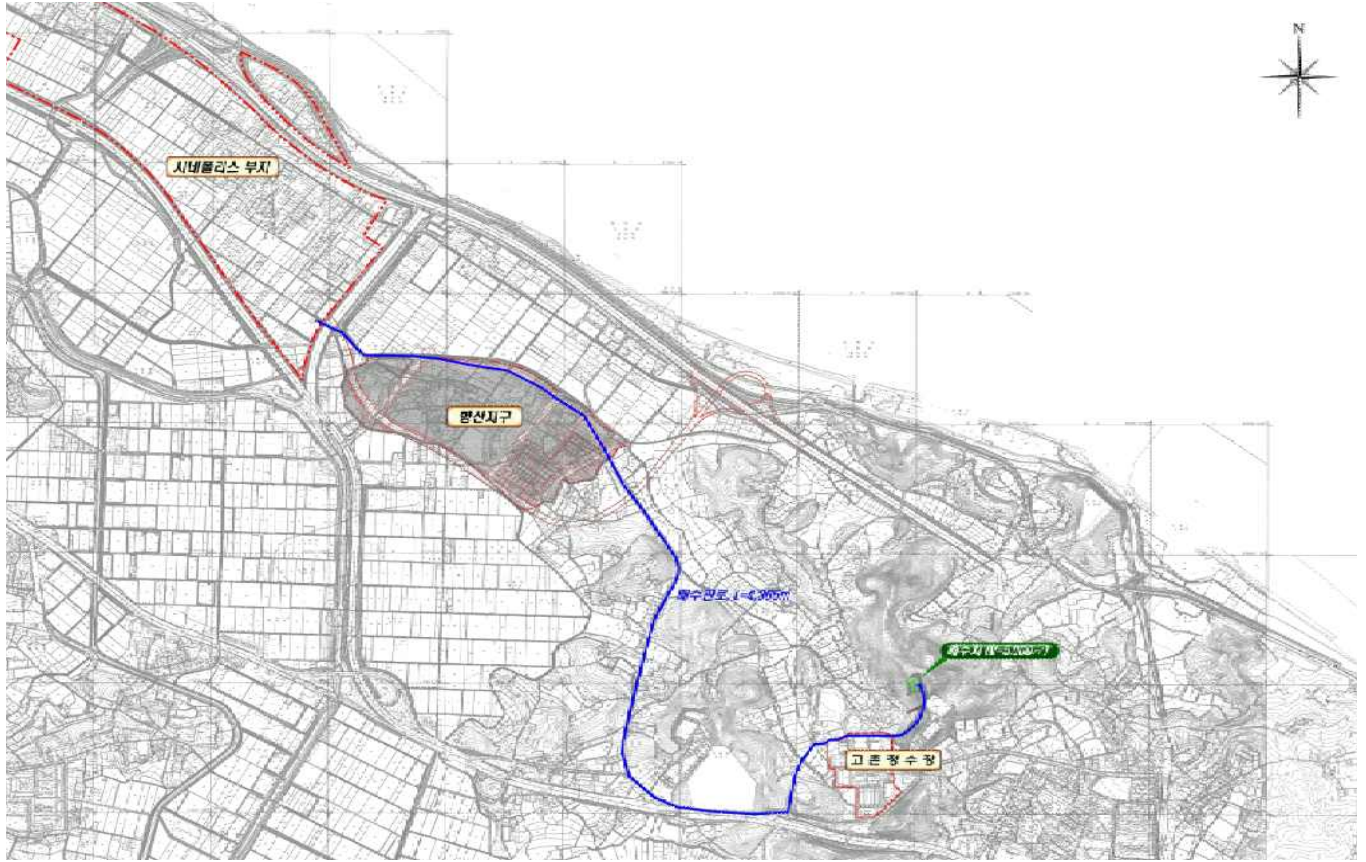
구분	주요사업내용(추진실적)	비고
2016년	공업용수도 기본 및 실시설계 완료	
2017년	-	
2018년	도시계획시설결정 도시계획위원회 개최	

○ 최근3년 결산현황

(단위 : 천원)

연도	최종예산액	집행액	이월액	불용액	비고
2016년	626,000	536,290	-	89,710	국비반납
2017년					
2018년	567,000	-	567,000	-	국비이월

□ 위치도 및 현장사진(해당없을시 미제출)



□ 사업부서 및 담당자

부서명	도시관리과	특화사업팀장 김재성	담당자	시설7급 박효상	전화	5518
-----	-------	------------	-----	----------	----	------

농업기술센터

2018년도 제4회 추경
사업설명서

농정과



[농업인력 육성] [P -97]

□ 사업개요

- 사업기간 : 2018년 12월 ○ 위 치 : 김포시 월곶면
- 사업규모 : 농업기술센터 직원 및 농업인단체 170명
-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 : 혁신농업 구상을 위한 워크숍 개최로 직무 전문성 확보
- 예산확보 실적 및 향후계획

(단위 : 천원)

구 분	총사업비 (A+B+F)	2017년 예산액(까지) (A)	2018년 예산액				2017년 예산 대비 증감 (B-A)	향후투자 (F)	비고
			계 (B=C+D+E)	본예산 (C)	1~3회 추경 (D)	4회 추경 요구액(E)			
계		4,200	12,222	6,400		5,822	8,022		
국 비									
도 비									
시 비		4,200	12,222	6,400		5,822	8,022		
기 타									

□ 법적근거

근거법령	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	제28조 제4호, 제29조 제1항
근거내용	제28조(직장훈련의 내용) 직장훈련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4호 부서별 또는 직무분야별 전문지식과 기술의 습득을 위한 교육훈련 제29조(직장훈련의 실시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소속 기관의 장은 부서별 또는 직무분야별로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체계적인 직장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.	

□ 사업성격 및 사전절차 이행여부

사업 성격		사전절차 이행여부						
신규■	계속□	중기지방 재정계획	투자심사	공유재산 관리계획	학술용역비 사전심사	정보화사업 사전협의	민간위탁 의회동의	출연·출자 의회의결
경상■	자본□	비대상	비대상	비대상	비대상	비대상	비대상	비대상
자체■	보조□	-	-	-	-	-	-	-

□ 예산요구 필요성 및 사업내용

- 혁신적인 농업 발전 로드맵 구상을 위한 워크숍 실시로 직원간의 소통과 화합을 도모하고
- 전문 강사 초빙으로 직무의 전문성 확보를 위한 노력과 미래 농업 발전의 기초를 다지고자 함
- 집단사고, 집단작업을 통한 전문적인 성장을 통한 새로운 농업발전의 패러다임 창출

□ **사업비 산출내역**

(단위 : 천원)

사업명	통계목	사업내용 및 산출내역(자세하게 작성)	비고
혁신농업 로드맵 구상을 위한 워크숍	201-01 사무관리비	.숙박비 : 15,000원*102명*1박 = 1,530 .급식비 : 8,000원*102명*3회 = 2,448 .강사비 : 370,000원*2명*2회 = 740 .기타경비 = 544 - 현수막 제작 100,000원*2장 - 교재 제작 2,000원*172권	
	301-09 행사실비보상금	.급식비 : 8,000원*70명*1회 = 560	

□ **사업 추진계획 (시설비 등 투자사업 외)**

○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

- 2018.11. : 워크숍 계획수립
- 2018.12.21. ~ 2018.12.22. : 워크숍 실시

□ **최근 3년 추진실적 및 결산현황**

- 2018년 신규사업으로 해당없음

□ **사업부서 및 담당자**

부서명	농정과	농정팀장 윤용철	담당자	행정7급 배정준	전화	2806
-----	-----	----------	-----	----------	----	------

□ 사업비 산출내역

(단위 : 천원)

사업명	통계목	사업내용 및 산출내역(자세하게 작성)	비고
청년농업인영농 정착지원사업	201-01 사무관리비	· 내시변경으로 사무관리비예산(5,327천원)을 민간경상보조 예산으로 이관 · 청년농업인영농정착지원사업 사무관리비 5,373천원 - 5,327천원	= 0
청년농업인영농 정착지원사업	307-02 민간경상보조	· 9명*1,000천원*9개월*09(소득차감)*9개월(4~12월) *민간경상보조 57,373천원 +5,327천원	= 62,700

□ 사업 추진계획 (시설비 등 투자사업 외)

○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(계획수립, 사업추진절차 및 내용 자세히 작성)

- 2018.01~2018.02. : 청년농업인영농정착지원사업 접수
- 2018.02.~2019.04 : 사업자 선정 및 심의(1차 관내 심의 2차 경기도 심의 및 면접)
- 2018.05. ~ : 1차 청년농업인영농정착지원사업 선정자 지급 시작
- 2018.06~2018.07 : 청년농업인영농정착지원사업 추가 접수
- 2018.07~2018.08 : 청년농업인영농정착지원사업 추가 선발
- 2018.09. ~ : 청년농업인영농정착지원사업 추가선정자 지급 시작
- 2018.11. : 영농정착지원금 41,200천원 1차 지급 완료
(농정원에서 창업농에게 일괄 지급 후 해당 시군에 청구하도록 되어있음.)
- 2018.12. : 청년창업농 2차지급 예정

□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결산현황

○ 최근3년 추진실적

구분	주요사업내용(추진실적)	비고
2018년	○ 청년영농정착지원사업 9명 선발(본예산 선정 7명, 2018년 9월 추가선발2명) - 2018년 4월 영농정착지원금 지급 시작 - 2018년 6월 : 영농정착지원금 37,800천원 농정원 1차 지급, - 2018년 12월 : 영농정착지원금 16,000천원 추가집행 예정	2018 신규사업

○ 최근3년 결산현황

(단위 : 천원)

연도	최종예산액	집행액	이월액	불용액	비고
2018년	62,700	53,800	-	8,900	2018 신규사업

□ 사업부서 및 담당자

부서명	농정과	농정팀장 윤용철	담당자	농업8급 한유진	전화	2809
-----	-----	----------	-----	----------	----	------

[농촌체험휴양마을 역량강화] (P - 98)

□ 사업개요

- 사업기간 : 2018년 1월 ~ 12월 ○ 위 치 : 한강노을빛마을(하성면 봉성2리), 매화미르마을(월곶면 용강리)
- 사업규모 : 2명
-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 : 농촌을 이끌어갈 핵심 인재 양성을 통한 농촌체험휴양마을의 소득 향상과 농어촌 체험관광 활성화 도모
- 예산확보 실적 및 향후계획

(단위 : 천원)

구 분	총사업비 (A+B+F)	2017년 예산액(까지) (A)	2018년 예산액				2017년 예산 대비증감 (B-A)	향후투자 (F)	비고
			계 (B=C+D+E)	본예산 (C)	1~3회 추경 (D)	4회 추경 요구액(E)			
계	500		500	480	20	0	500		
국 비	250		250	240	10		250		
도 비	45		45			45	45		
시 비	105		105	144	6	△45	105		
기 타	100		100	96	4		100	자부담	

□ 법적근거

근거법령	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	제6조 제2항
근거내용	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체험·휴양마을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농어촌체험·휴양마을사업자에게 농어촌체험·휴양마을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.	

□ 사업성격 및 사전절차 이행여부

사업성격		사전절차 이행여부						
신규□	계속■	중기지방 재정계획	투자심사	공유재산 관리계획	학술용역비 사전심사	정보화사업 사전협의	민간위탁 의회동의	출연·출자 의회의결
경상■	자본□	비대상	비대상	비대상	비대상	비대상	비대상	비대상
자체□	보조■	-	-	-	-	-	-	-

□ 예산요구 필요성 및 사업내용

- 관내 농어촌체험·휴양마을로 지정받은 마을 리더의 역량강화 교육을 통한 인재 양성
- 경기도 변경내시(도비 부담)에 따른 부담지시율 변경

□ 사업비 산출내역

(단위 : 천원)

사업명	통계목	사업내용 및 산출내역	비 고
농촌체험휴양마을 역량강화	307-02 민간경상사업보조	.250,000원×2명×80%	= 400

□ 사업 추진계획 (시설비 등 투자사업 외)

○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

- 2018.01~2018.03 : 역량강화 교육 기본계획 시달 및 수립
- 2018.04~2018.09 : 역량강화 교육 참여자 수요조사
- 2018.10~2018.11 : 사업집행(보조금 지급) 및 역량강화 교육 실시
- 2018.12 : 결과보고 및 평가(정산)

□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결산현황

○ 최근3년 추진실적

구분	주요사업내용(추진실적)	비고
2018년	○ 농촌체험휴양마을 역량강화 교육 참여(11월 추진중) : 2명(한강노을맞마을 1명, 매화미르마을 1명)	신규사업

○ 최근3년 결산현황

(단위 : 천원)

연도	최종예산액	집행액	이월액	불용액	비고
2018년	400	400			신규사업

□ 사업부서 및 담당자

부서명	농정과	농정팀장 윤용철	담당자	농업7급 구주현	전화	2807
-----	-----	----------	-----	----------	----	------

[농촌체험휴양마을 보험가입 지원] (P - 98)

□ 사업개요

- 사업기간 : 2018년 1월 ~ 12월 ○ 위 치 : 한강노을빛마을(하성면 봉성2리), 매화미르마을(월곶면 용강리)
- 사업규모 : 2개소
-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 : 안전한 체험활동 여건 조성을 위한 보험가입 지원으로 농촌체험휴양마을에 안전 장치 마련 및 관광객 유도
- 예산확보 실적 및 향후계획

(단위 : 천원)

구 분	총사업비 (A+B+F)	2017년 예산액(까지) (A)	2018년 예산액				2017년 예산 대비 증감 (B-A)	향후투자 (F)	비고
			계 (B=C+D+E)	본예산 (C)	1~3회 추경 (D)	4회 추경 요구액(E)			
계	1,572		1,572	1,420	152	0	1,572		
국 비	786		786	710	76		786		
도 비	141		141			141	141		
시 비	331		331	426	46	△141	331		
기 타	314		314	284	30		314	자부담	

□ 법적근거

근거법령	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	제6조 제2항
근거내용	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체험·휴양마을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농어촌체험·휴양마을사업자에게 농어촌체험·휴양마을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.	

□ 사업성격 및 사전절차 이행여부

사업성격		사전절차 이행여부						
신규□	계속■	중기지방 재정계획	투자심사	공유재산 관리계획	학술용역비 사전심사	정보화사업 사전협의	민간위탁 의회동의	출연·출자 의회의결
경상■	자본□	비대상	비대상	비대상	비대상	비대상	비대상	비대상
자체□	보조■	-	-	-	-	-	-	-

□ 예산요구 필요성 및 사업내용

- 농어촌체험·휴양마을로 지정받은 마을에 보험가입 지원을 통한 안전한 마을로 방문객에게 인지시켜 편안한 휴식공간 제공
- 경기도 변경내시(도비 부담)에 따른 부담지시율 변경

□ 사업비 산출내역

(단위 : 천원)

사업명	통계목	사업내용 및 산출내역	비고
농촌체험휴양마을 보험가입 지원	307-02 민간경상사업보조	.보험가입비 786,000원×2개소×80%	= 1,258

□ 사업 추진계획 (시설비 등 투자사업 외)

○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

- 2018.01~2018.03 : 농촌체험휴양마을 보험가입 지원 관련 기본계획 시달 및 수립
- 2018.03~2018.10 : 보험가입 수요조사(사업대상자 선정) 및 사업집행
- 2018.11~2018.12 : 결과보고 및 평가(정산)

□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결산현황

○ 최근3년 추진실적

구분	주요사업내용(추진실적)	비고
2018년	○ 농촌체험휴양마을 보험가입(체험안전보험) : 2개소(한강노을빛마을) ○ 농촌체험휴양마을 보험가입(화재보험) : 1개소(한강노을빛마을, 매화미르마을)	신규사업

○ 최근3년 결산현황

(단위 : 천원)

연도	최종예산액	집행액	이월액	불용액	비고
2018년	1,258	658		600	신규사업

□ 사업부서 및 담당자

부서명	농정과	농정팀장 윤용철	담당자	농업7급 구주현	전화	2807
-----	-----	----------	-----	----------	----	------

□ **사업 추진계획 (시설비 등 투자사업 외)**

-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(계획수립, 사업추진절차 및 내용 자세히 작성)
 - 2018.02 ~ 2018.04 : 신청접수
 - 2018.05 ~ 2018.11 : 사업자 선정 및 이행점검
 - 2018.12 : 타작물 재배 지원금 지급

□ **최근 3년 추진실적 및 결산현황**

○ **최근3년 추진실적**

구분	주요사업내용(추진실적)	비고
2018년	추진중	

○ **최근3년 결산현황**

(단위 : 천 원)

연도	최종예산액	집행액	이월액	불용액	비고
2018년	999,600	40,000	0	959,600	

□ **사업부서 및 담당자**

부서명	농정과	농업지원팀장 신철우	담당자	농업8급 변미용	전화	2811
-----	-----	------------	-----	----------	----	------

□ 사업 추진계획 (시설비 등 투자사업 외)

-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
 - 2018.02 ~ 2018.04 : 신청접수
 - 2018.05 ~ 2018.11 : 사업자 선정 및 이행점검
 - 2018.12 : 타작물 재배 지원금 지급

□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결산현황

○ 최근3년 추진실적

구분	주요사업내용(추진실적)	비고
2018년	추진중	

○ 최근3년 결산현황

(단위 : 천 원)

연도	최종예산액	집행액	이월액	불용액	비고
2018년	999,600	40,000	0	959,600	

□ 사업부서 및 담당자

부서명	농정과	농업지원팀장 신철우	담당자	농업8급 변미용	전화	2811
-----	-----	------------	-----	----------	----	------

[친환경 농산물 인증 확대] (P - 99)

□ 사업개요

- 사업기간 : 2018년 1월 ~ 2018년 12월
- 사업규모 : 147건
-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 : 친환경농산물 인증(유기농·무농약)에 따른 검사비용 지원으로 친환경농업 육성 도모
- 예산확보 실적 및 향후계획

(단위 : 천원)

구 분	총사업비 (A+B+F)	2017년 예산액(까지) (A)	2018년 예산액			2017년 예산 대비 증감 (B-A)	향후투자 (F)	비고
			계 (B=C+D+E)	본예산 (C)	1~3회 추경 (D)			
계		44,000	72,000		47,000	25,000		
국 비								
도 비		5,520	10,080		6,580	3,500		
시 비		22,080	40,320		26,320	14,000		
기 타		16,400	21,600		14,100	7,500		자부담

□ 법적근거

근거법령	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·지원에 관한 법률	제16조
근거내용	농림축산식품부장관·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물품의 생산자, 생산자단체, 유통업자, 수출업자 및 인증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시설의 설치자금 등을 친환경농어업에 대한 기여도 및 제32조의2제1항에 따른 평가 등급에 따라 차등하여 지원할 수 있다.	

□ 사업성격 및 사전절차 이행여부

사업성격		사전절차 이행여부						
신규□	계속■	중기지방 재정계획	투자심사	공유재산 관리계획	학술용역비 사전심사	정보화사업 사전협의	민간위탁 의회동의	출연·출자 의회의결
경상■	자본□	비대상	비대상	비대상	비대상	비대상	비대상	비대상
자체□	보조■			-	-	-	-	

□ 예산요구 필요성 및 사업내용

- 수수료, 심사원출장비, 토양·수질·잔류농약 분석비, 운영실비 등 친환경농산물 인증검사에 소요되는 비용 일부지원으로 친환경재배 농업인의 경영부담 경감
- 친환경농업을 확산하고 고품질의 안전한 농산물을 선호하는 소비자 기호 충족으로 농산물 소비촉진

□ 사업비 산출내역

(단위 : 천원)

사업명	통계목	사업내용 및 산출내역(자세하게 작성)	비 고
친환경농산물 인증확대사업	301-11 기타보상금	친환경농산물 인증비 490천원 * 147건 * 70% =	50,400

□ 사업 추진계획 (시설비 등 투자사업 외)

-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
 - 2018.01 ~ 2018.02 : 사업설명 및 홍보
 - 2018.02 ~ 2018.12 : 사업신청 및 접수 및 정산지급
 - 2019.12 : 보조금 사업 실적보고 및 정산

□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결산현황

○ 최근3년 추진실적

구분	주요사업내용(추진실적)	비고
2016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농 가 수 : 59호 • 지원 면적 : 33.52ha • 지원 금액 : 27,942천원 	
2017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농 가 수 : 89호 • 지원 면적 : 117.91ha • 지원 금액 : 26,204천원 	
2018년	추진중	

○ 최근3년 결산현황

(단위 : 천 원)

연도	최종예산액	집행액	이월액	불용액	비고
2016년	16,800	16,765	0	35	
2017년	27,600	26,204	0	1,396	
2018년	50,400	50,400	0	0	

□ 사업부서 및 담당자

부서명	농정과	농업지원팀장 신철우	담당자	농업8급 변미용	전화	2811
-----	-----	------------	-----	----------	----	------

[발농업직불금] (P - 99)

□ 사업개요

- 사업기간 : 2018년 2월 ~ 2018년 12월
- 사업규모 : 642ha
-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 : 발작물 재배 농가의 소득안정과 주요 발작물의 자급률 제고
- 예산확보 실적 및 향후계획

(단위 : 천원)

구 분	총사업비 (A+B+F)	2017년 예산액(까지) (A)	2018년 예산액				2017년 예산 대비 증감 (B-A)	향후투자 (F)	비고
			계 (B=C+D+E)	본예산 (C)	1~3회 추경 (D)	4회 추경 요구액(E)			
계		320,000	313,320	280,083	20,337	12,900	6,680		
국 비		320,000	313,320	280,083	20,337	12,900	6,680		
도 비									
시 비									
기 타								자부담	

□ 법적근거

근거법령	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	제 4조 1항
근거내용	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「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협정」에 따른 국내보조 감축약속 면제기준과 범위에서 농업인등의 소득안정을 위하여 농업인등에게 소득보조금(이하 “농업소득 보전직접지불금”이라 한다)을 지급하여야 한다.	

□ 사업성격 및 사전절차 이행여부

사업성격		사전절차 이행여부						
신규□	계속■	중기지방 재정계획	투자심사	공유재산 관리계획	학술용역비 사전심사	정보화사업 사전협의	민간위탁 의회동의	출연·출자 의회의결
경상■	자본□	반영	조건부추진	비대상	비대상	비대상	비대상	의결
자체□	보조■	2017.11월	2018.4월	-	-	-	-	2018.8월

□ 예산요구 필요성 및 사업내용

- 소득이 많지 않고 생산이 감소되는 품목의 재배농가의 농가소득보전
- 발농업직불금 지원으로 대상품목의 자급률 제고 및 생산기반 유지

□ 사업비 산출내역

(단위 : 천원)

사업명	통계목	사업내용 및 산출내역(자세하게 작성)	비 고
발농업직불제	301-11 기타보상금	· 발농업직불제 : 26.5ha * 488천원 =	12,932

[친환경농산물 재배장려금 지원] [P - 99]

□ 사업개요

- 사업기간 : 2019년 1월 ~ 2019년 12월
- 사업규모 : 158.3ha
-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 : 친환경농산물 재배에 따른 경영비용 및 생산량 감소분 지원으로 친환경농업 경작 유도
- 예산확보 실적 및 향후계획

(단위 : 천원)

구 분	총사업비 (A+B+F)	2017년 예산액(까지) (A)	2018년 예산액				2017년 예산 대비 증감 (B-A)	향후투자 (F)	비고
			계 (B=C+D+E)	본예산 (C)	1~3회 추경 (D)	4회 추경 요구액(E)			
계		20,291	40,700	11,595	46,381	△17,276	20,409		
국 비									
도 비		20,291	40,700	11,595	46,381	△17,276	20,409		
시 비									
기 타								자부담	

□ 법적근거

근거법령	「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」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	제16조 제1항
근거내용	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친환경농업의 조기 정착을 도모하고, 환경보전 등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높이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는 농업인등에게 친환경농업소득보조금(이하 “친환경농업보조금”이라 한다)을 지급한다.	

□ 사업성격 및 사전절차 이행여부

사업성격		사전절차 이행여부						
신규	계속■	중기지방 재정계획	투자심사	공유재산 관리계획	학술용역비 사전심사	정보화사업 사전협의	민간위탁 의회동의	출연·출자 의회의결
경상■	자본□	반영	조건부추진	비대상	비대상	비대상	비대상	비대상
자체□	보조■			-	-	-	-	

□ 예산요구 필요성 및 사업내용

- 친환경농산물 재배에 따른 경영비용 및 생산량 감소분 지원을 통해 현대농법의 부작용을 줄이는 동시에 농업생산의 경제성 확보, 환경보전적 가치 증대, 농산물의 안전성 등 공익적 기능 강화

□ 사업비 산출내역

(단위 : 천원)

사업명	통계목	사업내용 및 산출내역(자세하게 작성)	비고
친환경농산물 재배장려금 지원	301-11 기타보상금	· 친환경농산물재배장려금 428천원 * 95ha * 100% = 40,700	

□ 사업 추진계획 (시설비 등 투자사업 외)

-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
 - 2018.01 : 사업지침 설명 및 공고·홍보
 - 2018.03 : 친환경 재배장려금 신청
 - 2018.05 ~ 2018.11 : 이행점검
 - 2018.12 : 보조금 지급

□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결산현황

○ 최근3년 추진실적

구분	주요사업내용(추진실적)	비고
2016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농 가 수 : 24 • 지급 면적 : 121,953㎡ • 지급 금액 : 3,751천원 	
2017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농 가 수 : 85 • 지급 면적 : 915,925㎡ • 지급 금액 : 13,963천원 	
2018년	추진중	

○ 최근3년 결산현황

(단위 : 천 원)

연도	최종예산액	집행액	이월액	불용액	비고
2016년	3,751	3,751	0	0	
2017년	20,291	13,963	0	6,328	
2018년	40,700	40,700	0	0	

□ 사업부서 및 담당자

부서명	농정과	농업지원팀장 신철우	담당자	농업8급 변미용	전화	2811
-----	-----	------------	-----	----------	----	------

[GAP인증농가 안전성 검사비 지원] (P - 100)

□ 사업개요

- 사업기간 : 2018. 1 ~ 12월
- 사업규모 : 78농가
-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 : GAP인증농가 안전성 검사비 지원으로 농산물우수관리제도(GAP) 활성화
- 예산확보 실적 및 향후계획

○ 위 치 : 김포시 관내

(단위 : 천원)

구 분	총사업비 (A+B+F)	2017년 예산액(까지) (A)	2018년 예산액			2017년 예산 대비 증감 (B-A)	향후투자 (F)	비고
			계 (B=C+D+E)	본예산 (C)	1~3회 추경 (D)			
계		16,030	15,000	16,030	0	△1,030	△1,030	
국 비		11,220	10,500	11,220		△720	△720	
도 비			1,350		1,440	△90	1,350	
시 비		4,810	3,150	4,810	△1,440	△220	△1,660	
기 타								

□ 법적근거

근거법령	농수산물품질관리법	제110조
근거내용	정부는 농수산물의 품질 향상 또는 농수산물의 표준규격화 및 물류표준화의 촉진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장자재, 시설 및 자동화장비 등의 매입 및 농산물품질관리사 또는 수산물품질관리사 운용 등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. <개정 2013. 3. 23., 2013. 8. 13.> 3. 우수관리인증을 받은 자, 우수관리인증기관, 농산물 수확 후 위생·안전 관리를 위한 시설의 사업자 또는 우수관리인증 교육을 실시하는 기관·단체	

□ 사업성격 및 사전절차 이행여부

사업성격		사전절차 이행여부						
신규■	계속□	중기지방 재정계획	투자심사	공유재산 관리계획	학술용역비 사전심사	정보화사업 사전협의	민간위탁 의회동의	출연·출자 의회의결
경상■	자본□	비대상	비대상	비대상	비대상	비대상	비대상	비대상
자체□	보조■	-	-	-	-	-	-	-

□ 예산요구 필요성 및 사업내용

- 경기도 농식품유통과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른 감액
- 농산물우수관리제도(GAP) 활성화 및 GAP 인증 확산을 위한 안전성 분석 검사비 지원

□ 사업비 산출내역

(단위 : 천원)

사업명	통계목	사업내용 및 산출내역	비고
GAP인증농가 안전성 검사비 지원	301-11 기타보상금	.당초 : 인증검사비 190,000원 * 84농가 = 16,030 .변경 : 인증검사비 190,000원 * 78농가 = 15,000 (△1,030)	

□ 사업 추진계획 (시설비 등 투자사업 외)

-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
 - 2018.3 : 사업신청안내 및 홍보
 - 2018.04 ~ 2018.12 : 신청대상자 사업비 지급 및 사업추진

□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결산현황

○ 최근3년 추진실적

구분	주요사업내용(추진실적)	비고
2016년	- GAP 인증농가 토양, 용수, 농산물 검사비 지급(15개소)	
2017년	- GAP 인증농가 토양, 용수, 농산물 검사비 지급(14개소)	
2018년	- GAP 인증농가 토양, 용수, 농산물 검사비 지급(5개소)	

○ 최근3년 결산현황

(단위 : 천원)

연도	최종예산액	집행액	이월액	불용액	비고
2016년	21,030	15,313	-	5,717	
2017년	16,030	5,779	-	10,251	
2018년	15,000	15,000	-	-	

□ 사업부서 및 담당자

부서명	농정과	유통팀장 최근식	담당자	농업7급 손동임	전화	2813
-----	-----	----------	-----	----------	----	------

[친환경 등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] [P - 100]

□ 사업개요

- 사업기간 : 2019. 1 ~12월
- 사업규모 : 관내 초·중·특수학교(54,000명)
-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 : 우수농산물의 안정적인 판로 확보 및 도내 친환경농업인의 소득 증대 도모
- 예산확보 실적 및 향후계획

○ 위 치 : 김포시 관내학교

(단위 : 천원)

구 분	총사업비 (A+B+F)	2017년 예산액(까지) (A)	2018년 예산액				2017년 예산 대비 증감 (B-A)	향후투자 (F)	비고
			계 (B=C+D+E)	본예산 (C)	1~3회 추경 (D)	4회 추경 요구액(E)			
계		1,774,048	1,947,458	1,462,520	234,938	250,000	173,410		
국 비				50,000					
도 비		887,024	973,729	731,260	117,469	125,000	86,705		
시 비		887,024	973,729	731,260	117,469	125,000	86,705		
기 타									

□ 법적근거

근거법령	학교급식법	제8조
근거내용	특별시장·광역시장·도지사·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·군수·자치구의 구청장은 학교급식에 품질이 우수한 농산물 사용 등 급식의 질 향상과 급식시설·설비의 확충을 위하여 식품비 및 시설·설비비 등 급식에 관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.	

□ 사업성격 및 사전절차 이행여부

사업성격		사전절차 이행여부						
신규□	계속■	중기지방 재정계획	투자심사	공유재산 관리계획	학술용역비 사전심사	정보화사업 사전협의	민간위탁 의회의동의	출연·출자 의회의결
경상■	자본□	비대상	비대상	비대상	비대상	비대상	비대상	비대상
자체□	보조■			-	-	-	-	

□ 예산요구 필요성 및 사업내용

- 우수농산물(친환경·G마크)의 안정적인 판로확보 및 고품질의 안전한 학교급식 실현
- 친환경 농산물 급식을 요구하는 학교 수 증가에 대한 현실 반영 및 기대부응

□ 사업비 산출내역

(단위 : 천원)

사업명	통계목	사업내용 및 산출내역	비 고
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	301-11 기타보상금	.231원*54,000명*20일 = 250,000	

□ 사업 추진계획 (시설비 등 투자사업 외)

○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

- 2018.01~2018.12 : 무상급식 일화에 따른 학교 급식에 우수농산물(친환경·G마크)을 공급함으로써 고품질의 안전한 학교급식 실현 및 친환경 급식 체계개선 및 공공성의 투명성 제고

□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결산현황

○ 최근3년 추진실적

구분	주요사업내용(추진실적)	비고
2017년	- 친환경 농산물 42개소 / 777톤 (농산물 665톤, 쌀 112톤)	
2018년	- 친환경 농산물 60개소 / 1,015톤 【농산물 711톤, 쌀 304톤(2018. 10월현재)】	

○ 최근3년 결산현황

(단위 : 천원)

연도	최종예산액	집행액	이월액	불용액	비고
2017년	1,774,048	1,761,410	180,000	12,638	
2018년	1,697,458	1,697,458	-	-	

□ 사업부서 및 담당자

부서명	농정과	유통팀장 최근식	담당자	행정8급 김용구	전화	2814
-----	-----	----------	-----	----------	----	------

2018년도 제4회 추경
사업설명서

축수산과



[축산분야 ICT 융복합 확산사업] (P - 102)

□ 사업개요

- 사업기간 : 2018년 12월 ~ 2019년 9월
- 사업규모 : 1개소
-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 : 축산분야 ICT 시설기반 구축으로 자동원격제어를 통한 사양관리 등 최적 사육환경 조성
- 예산확보 실적 및 향후계획

○ 위 치 : 관내 낙농 농가

(단위 : 천원)

구 분	총사업비 (A+B+F)	2017년 예산액(까지) (A)	2018년 예산액			2017년 예산 대비 증감 (B-A)	향후투자 (F)	비고
			계 (B=C+D+E)	본예산 (C)	1~3회 추경 (D)			
계		568,477	339,000		140,000	199,000	△229,477	
국 비		170,543	101,700		42,000	59,700	△68,843	
도 비								
시 비								
기 타		397,934	237,300		98,000	139,300	△160,634	자부담

□ 법적근거

근거법령	축산법	제3조
근거내용	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가축의 개량·증식, 토종가축의 보존·육성, 축산업의 구조개선, 가축과 축산물의 수급조절·가격안정·유통개선, 사료의 안정적 수급, 축산 분뇨의 처리 및 자원화, 가축 위생 등 축산 발전에 필요한 계획과 시책을 종합적으로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	

□ 사업성격 및 사전절차 이행여부

사업성격		사전절차 이행여부						
신규□	계속■	중기지방 재정계획	투자심사	공유재산 관리계획	학술용역비 사전심사	정보화사업 사전협의	민간위탁 의회동의	출연·출자 의회의결
경상□	자본■	비대상	비대상	비대상	비대상	비대상	비대상	비대상
자체□	보조■	-	-	-	-	-	-	-

□ 예산요구 필요성 및 사업내용

- 축산농가에 지능형 축산관리시스템 보급으로 생산비 절감 및 축산경쟁력 강화
- 최적의 사육환경 조성을 위한 첨단 설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보조 지원은 전액 국비 사업
- 2018년11월 2차 대상자 선정에 따른 사업비 변경내시에 따른 증액

□ **사업비 산출내역**

(단위 : 천원)

사업명	통계목	사업내용 및 산출내역(자세하게 작성)	비고
축산분야 ICT 융복합 확산사업	402-02 민간자본보조 (이전재원)	· 자동착유기 시설 : 199,000,00천원*1개소*30% = 59,700	

□ **사업 추진계획**

○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

- 2018.12 : 예산편성 및 이월
- 2019.03~2019.09 : 사업진행
- 2019.09 : 보조금 집행 및 정산

□ **최근 3년 추진실적 및 결산현황**

○ **최근3년 추진실적**

구분	주요사업내용(추진실적)	비고
2016년	사업규모 : 3개소 사업내용 : 발정탐지기, 스마트웬, 컨트롤 모니터, 자동착유기 등 집행액/예산액 : 25,500천원/26,940천원	
2017년	사업규모 : 2개소 사업내용 : TMR배합기, 사료급이기, 선풍기 등 집행액/예산액 : 44,277천원/170,543천원	
2018년	사업규모 : 2개소 사업내용 : TMR배합기, 사료급이기, 선풍기 등 집행액/예산액 : 44,277천원/227,966천원	

○ **최근3년 결산현황**

(단위 : 천원)

연도	최종예산액	집행액	이월액	불용액	비고
2016년	26,940	25,500	0	1,440	
2017년	170,543	44,277	126,266	0	
2018년	227,966 (이월액포함)	124,766	59,700	43,500	

□ **사업부서 및 담당자**

부서명	축수산과	축산팀장 송진현	담당자	행정7급 이재근	전화	2818
-----	------	----------	-----	----------	----	------

(가축행복농장지원사업) [P - 102]

□ 사업개요

- 사업기간 : 2018년 9월 ~ 12월 ○ 위 치 : 관내 축산농가
- 사업규모 : 기존 2농가 -> 0농가
-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 : 경기도 가축행복농장 인증 및 지원을 통한 친환경 사육 확대
- 예산확보 실적 및 향후계획

(단위 : 천원)

구 분	총사업비 (A+B+F)	2017년 예산액(까지) (A)	2018년 예산액			2017년 예산 대비 증감 (B-A)	향후투자 (F)	비고
			계 (B=C+D+E)	본예산 (C)	1~3회 추경 (D)			
계	0		0		400,000	△400,000	0	
국 비								
도 비	0		0		100,000	△100,000		
시 비	0		0		100,000	△100,000	0	
기 타	0		0		200,000	△200,000		자부담

□ 법적근거

근거법령	축산법	제3조
근거내용	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가축의 개량·증식, 토종가축의 보존·육성, 축산업의 구조개선, 가축과 축산물의 수급조절·가격안정·유통개선, 사료의 안정적 수급, 축산 분뇨의 처리 및 자원화, 가축 위생 등 축산 발전에 필요한 계획과 시책을 종합적으로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	

□ 사업성격 및 사전절차 이행여부

사업성격		사전절차 이행여부						
신규■	계속□	중기지방 재정계획	투자심사	공유재산 관리계획	학술용역비 사전심사	정보화사업 사전협의	민간위탁 의회동의	출연·출자 의회결
경상□	자본■	비대상	비대상	비대상	비대상	비대상	비대상	비대상
자체□	보조■	-	-	-	-	-	-	-

□ 예산요구 필요성 및 사업내용

- 가축행복농장지원사업에 대한 경기도 변경내시(2018.10.15.)에 따른 전액 삭감(사업자격이 주어지는 우리시 가축행복농장인증농가 없음)

□ 사업부서 및 담당자

부서명	축수산과	축산팀장 송진현	담당자	행정7급 이재근	전화	2818
-----	------	----------	-----	----------	----	------

[암염소도태장려금지원] [P - 102]

□ 사업개요

- 사업기간 : 2018년 10월 ~ 2019년 10월 ○ 위 치 : 관내 염소농가(양촌읍 누산리 1032-73)
- 사업규모 : 염소 70마리
-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 : 염소 사육두수 및 수입량 증가 등에 따른 공급과잉을 해소하기 위해 염소를 출하·도축하는 조건으로 염소장려금 지원
- 예산확보 실적 및 향후계획

(단위 : 천원)

구 분	총사업비 (A+B+F)	2017년 예산액(까지) (A)	2018년 예산액				2017년 예산 대비 증감 (B-A)	향후투자 (F)	비고
			계 (B=C+D+E)	본예산 (C)	1~3회 추경 (D)	4회 추경 요구액(E)			
계	7,000	0	7,000	0	0	7,000	7,000		
국 비	7,000	0	7,000	0	0	7,000	7,000		
도 비	0	0	0	0	0	0	0		
시 비	0	0	0	0	0	0	0		
기 타	0	0	0	0	0	0	0		

□ 법적근거

근거법령	축산법	제3조
근거내용	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가축의 개량·증식, 토종가축의 보존·육성, 축산업의 구조개선, 가축과 축산물의 수급조절·가격안정·유통개선, 사료의 안정적 수급, 축산 분뇨의 처리 및 자원화, 가축 위생 등 축산 발전에 필요한 계획과 시책을 종합적으로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	

□ 사업성격 및 사전절차 이행여부

사업성격		사전절차 이행여부						
신규■	계속□	중기지방 재정계획	투자심사	공유재산 관리계획	학술용역비 사전심사	정보화사업 사전협의	민간위탁 의회동의	출연·출자 의회의결
경상■	자본□	비대상	비대상	비대상	비대상	비대상	비대상	비대상
자체□	보조■	-	-	-	-	-	-	-

□ 예산요구 필요성 및 사업내용

- 염소 사육두수 증가 및 가격하락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염소농가들의 경영 안정 및 수급조절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

□ 사업비 산출내역

(단위 : 천원)

사업명	통계목	사업내용 및 산출내역(자세하게 작성)	비고
암염소도태장려 금지원	301-12 기타보상금	1세이상 가임 암염소 70마리*100,000원 = 7,000	출하·도태 조건으로 장려금 지급

□ 사업 추진계획

○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

- 2018. 10. 사업 신청 공모
- 2018. 11. 대상자 선정 및 추경 예산 편성
- 2018. 12. 명시이월
- 2019. 1.~10. 도태시기마다 장려금 지급

□ 사업부서 및 담당자

부서명	축수산과	축산팀장 송진현	담당자	행정9급 임성민	전화	2821
-----	------	----------	-----	----------	----	------

[구제역 소득안정자금] (P - 102)

□ 사업개요

- 사업기간 : 2018년 11월 ~ 12월 ○ 위 치 : 관내 양돈농가(9농가)
- 사업규모 : 과체중·규격돈 3,099마리
-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 : 구제역 이동제한 당시 과체중·규격돈 3,099마리 차액분 보전
- 예산확보 실적 및 향후계획

(단위 : 천원)

구 분	총사업비 (A+B+F)	2017년 예산액(까지) (A)	2018년 예산액				2017년 예산 대비 증감 (B-A)	향후투자 (F)	비고
			계 (B=C+D+E)	본예산 (C)	1~3회 추경 (D)	4회 추경 요구액(E)			
계	376,096	0	376,096	0	0	376,096	376,096		
국 비	263,267	0	263,267	0	0	263,267	263,267		
도 비	0	0	0	0	0	0	0		
시 비	112,829	0	112,829	0	0	112,829	112,829		
기 타		0	0	0	0	0	0		

□ 법적근거

근거법령	축산법	제3조
근거내용	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가축의 개량·증식, 토종가축의 보존·육성, 축산업의 구조개선, 가축과 축산물의 수급조절·가격안정·유통개선, 사료의 안정적 수급, 축산 분뇨의 처리 및 자원화, 가축 위생 등 축산 발전에 필요한 계획과 시책을 종합적으로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	

□ 사업성격 및 사전절차 이행여부

사업성격		사전절차 이행여부						
신규■	계속□	중기지방 재정계획	투자심사	공유재산 관리계획	학술용역비 사전심사	정보화사업 사전협의	민간위탁 의회동의	출연·출자 의회의결
경상■	자본□	비대상	비대상	비대상	비대상	비대상	비대상	비대상
자체□	보조■	-	-	-	-	-	-	-

□ 예산요구 필요성 및 사업내용

○ 2018년 초 대곶면 돼지농가의 구제역 발생에 따른 관내 돼지농가들의 이동제한 조치로 출하를 하지 못한 돼지농가들의 손실보전을 위해 필요

□ 사업비 산출내역

(단위 : 천원)

사업명	통계목	사업내용 및 산출내역(자세하게 작성)	비고
소득안정자금지원	301-12 기타보상금	구제역 당시 이동제한조치에 따른 과체중, 규격돈 손실보상 3,099마리 = 376,096	3,099마리의 마리당 보상가격이 상이하여 산출내역 작성 곤란

□ 사업 추진계획

○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

- 2018. 11. : 국비 내시 및 4회 추경 예산 요구
- 2018. 12. : 의회 승인 이후 즉시 지출

□ 사업부서 및 담당자

부서명	축수산과	축산팀장 송진현	담당자	행정9급 임성민	전화	2821
-----	------	----------	-----	----------	----	------

□ **사업 추진계획**

○ **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**

- 2018.03~2018.04 : 구제역 발생농가 살처분
- 2018.09~2018.10 : 살처분 보상금 추경 국비예산 내시
- 2018.10~2018.11 : 살처분 보상평가 완료
- 2018.12 : 예산 수립 후 살처분 보상금 미지급농가 집행
- 2019.08~2019.09 : 결과보고 및 평가

□ **최근 3년 추진실적 및 결산현황**

○ **최근3년 추진실적**

구분	주요사업내용(추진실적)	비고
2016년	살처분보상금 지급 3호 예산액 102,500 / 집행액 93,032	
2017년	살처분보상금 지급 9호 예산액 859,468 / 집행액 783,319	
2018년	살처분보상금 지급 17호 예산액 3,676,148 / 집행액 3,041,294	

○ **최근3년 결산현황**

(단위 : 천 원)

연도	최종예산액	집행액	이월액	불용액	비고
2016년	102,500	93,032	9,468	-	
2017년	859,468 (이월액 포함)	783,319	76,149	-	
2018년	4,176,149 (이월액 포함)	4,076,148	-	100,001	

□ **사업부서 및 담당자**

부서명	축수산과	가축방역팀장 이재준	담당자	수의7급 신문주	전화	5952
-----	------	------------	-----	----------	----	------

[선제적 초소설치 사업] [P - 103]

□ 사업개요

- 사업기간 : 2018. 11월 ~ 2018. 12월 ○ 위 치 : 김포시 전지역
- 사업규모 : 5농가
-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 : 5만수 이상(상시 사육규모) 산란계 농장에 선제적 초소 설치를 통해 AI 발생 예방
- 예산확보 실적 및 향후계획

(단위 : 천원)

구 분	총사업비 (A+B+F)	2017년 예산액(까지) (A)	2018년 예산액				2017년 예산 대비 증감 (B-A)	향후투자 (F)	비고
			계 (B=C+D+E)	본예산 (C)	1~3회 추경 (D)	4회 추경 요구액(E)			
계	104,540		104,540		150,000	△45,460	104,540		
국 비	0		0		0	0	0		
도 비	31,362		31,362		45,000	△13,638	31,362		
시 비	73,178		73,178		105,000	△31,822	73,178		
기 타								자부담	

□ 법적근거

근거법령	가축전염병예방법	제50조
근거내용	제50조(비용의 지원 등)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3조, 제15조제1항 및 제3항, 제17조, 제17조의3, 제19조, 제20조, 제22조제2항 및 제3항, 제23조제1항 및 제3항 또는 제25조제2항에 따라 투약, 소독, 역학조사, 이동제한, 살처분 등을 하는 데 드는 비용이나 가축의 사체 또는 물건을 소각·매몰하는 데 드는 비용 및 주민 교육·홍보 등 지방자치단체의 방역활동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.	

□ 사업성격 및 사전절차 이행여부

사업성격		사전절차 이행여부						
신규■	계속□	중기지방 재정계획	투자심사	공유재산 관리계획	학술용역비 사전심사	정보화사업 사전협의	민간위탁 의회동의	출연·출자 의회의결
경상■	자본■	비대상	비대상	비대상	비대상	비대상	비대상	의결
자체□	보조■	-	-	-	-	-	-	-

□ 예산요구 필요성 및 사업내용

- 3회추경 사업으로 2018~2019년 특별방역대책기간중 농가 통제초소 설치 사업임.
- 산란계 5만수 이상 고위험 관리등급 농가 선제적 초소 설치 5초소 운영중이나 AI 상황에 따라 초소 확대 운영 계획
- 내시변경으로 예산 감액

□ 사업비 산출내역

(단위 : 천원)

사업명	통계목	사업내용 및 산출내역	비고
선제적초소 설치사업	101-04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	. 인 건 비 : 100,000원*5명*60일 = △30,000	
		. 재해보험 : 100,000원*5명 = △500	
	201-01 사무관리비	. 인 건 비 : 100,000원*5명*150일 = 75,000	
		. 재해보험 : 100,000원*5명 = 500	
		. 초소 운영 간식비: 4,000원*5명*60일 = △1,200	
	201-02 공공운영비	. 초소 운영비: 2,032,000원*5개소 = △10,160	
		. 초소 운영 간식비: 4,000원*5명*150일 = 3,000	
		. 장비 임차료: 4,000,000원*5개소 = 20,000	
		. 초소 운영비: 7,900,000원*5개소 = 39,500	
	401-01 시설비	. 전기요금 : 60,000*2개월*5개소 = △600	
. 유류비 등: 300,000*2개월 *5개소 = △3,000			
. 전기요금 : 60,000원*5개월*5개소 = 1,500			
		. 유류비 등: 300,000원*5개월 *5개소 = 7,500	
		. 전기시설 설치·철거비: 600,000원*5개소 = 3,000	

□ 사업 추진계획

○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

- 2018.10~2018.12 : 기본계획수립 및 사업집행
- 2019.01~2019.03 : 사업집행 및 결과보고, 평가

□ 사업부서 및 담당자

부서명	축수산과	가축방역팀장 이재준	담당자	수의7급 이정희	전화	2826
-----	------	------------	-----	----------	----	------

〔동물보호관리(자체)〕 [P - 103]

□ 사업개요

- 사업기간 : 2018년 1월 ~ 12월 ○ 위 치 : 김포 전지역
- 사업규모 : 동물보호소 1개소, 유기동물 100마리
-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 : 유기동물 보호관리 및 민원 해소
- 예산확보 실적 및 향후계획 (단위 : 천원)

구 분	총사업비 (A+B+F)	2017년 예산액(까지) (A)	2018년 예산액			2017년 예산 대비 증감 (B-A)	향후투자 (F)	비고
			계 (B=C+D+E)	본예산 (C)	1~3회 추경 (D)			
계	12,400		12,400			12,400		
국 비								
도 비								
시 비	12,400		12,400			12,400		
기 타								

□ 법적근거

근거법령	동물보호법	제15조제6항
근거내용	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제4항에 따른 동물보호센터에 동물의 구조·보호조치 등에 드는 비용(이하 "보호비용"이라 한다)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, 보호비용의 지급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 으로 정한다.	

□ 사업성격 및 사전절차 이행여부

사업성격		사전절차 이행여부						
신규■	계속□	중기지방 재정계획	투자심사	공유재산 관리계획	학술용역비 사전심사	정보화사업 사전협의	민간위탁 의회동의	출연·출자 의회의결
경상■	자본□	비대상	비대상	비대상	비대상	비대상	비대상	비대상
자체■	보조□	-	-	-	-	-	-	-

□ 예산요구 필요성 및 사업내용

- 유기동물의 적정 보호관리를 통한 민원해소 및 동물보호의식 고취
- 유기동물 민원 신고수 증가로 사업예산(도비지원)이 조기 소진

□ 사업비 산출내역

(단위 : 천원)

사업명	통계목	사업내용 및 산출내역	비 고
유기동물 구조보호	301-01 기타보상금	유기동물 : 100마리*124천원 = 12,400	

□ **사업 추진계획**

○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

- 2018.10~2018.11 : 동물보호관리 사업 추경 예산 확보 계획 보고
- 2018.11~2018.12 : 사업집행
- 2018.12~2019.01 : 결과보고 및 평가

□ **사업부서 및 담당자**

부서명	축수산과	동물위생팀장 박용준	담당자	행정9급 조왕희	전화	2893
-----	------	------------	-----	----------	----	------

[양돈경쟁력강화사업] (P - 104)

□ 사업개요

- 사업기간 : 2018. 1월 ~ 12월
- 위 치 : 관내 양돈농가(13농가)
- 사업규모 : 13개소(자돈인큐베이터 5개소, 우레탄단열시설 5개소, 안개분무시설 3개소)
-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 : 관내 양돈농가에 인큐베이터, 우레탄단열, 안개분무기 등을 지원하여 양돈 생산성 향상 및 악취 일부 절감
- 예산확보 실적 및 향후계획

(단위 : 천원)

구 분	총사업비 (A+B+F)	2017년 예산액(까지) (A)	2018년 예산액				2017년 예산 대비 증감 (B-A)	향후투자 (F)	비고
			계 (B=C+D+E)	본예산 (C)	1~3회 추경 (D)	4회 추경 요구액(E)			
계		40,000	160,000	128,000	82,000	Δ50,000	120,000	0	
국 비		0	0	0	0	0	0	0	
도 비		4,000	16,000	12,800	8,200	Δ5,000	12,000	0	
시 비		16,000	64,000	51,200	32,800	Δ20,000	48,000	0	
기 타		20,000	80,000	64,000	41,000	Δ25,000	60,000	0	자부담

□ 법적근거

근거법령	축산법	제3조
근거내용	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가축의 개량·증식, 토종가축의 보존·육성, 축산업의 구조개선, 가축과 축산물의 수급조절·가격안정·유통개선, 사료의 안정적 수급, 축산 분뇨의 처리 및 자원화, 가축 위생 등 축산 발전에 필요한 계획과 시책을 종합적으로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	

□ 사업성격 및 사전절차 이행여부

사업성격		사전절차 이행여부						
신규□	계속■	중기지방재정계획	투자심사	공유재산관리계획	학술용역비사전심사	정보화사업사전협의	민간위탁의회의동의	출연·출자의회의결
경상□	자본■	비대상	비대상	비대상	비대상	비대상	비대상	비대상
자체□	보조■	-	-	-	-	-	-	-

□ 예산요구 필요성 및 사업내용

- 관내 양돈농가의 생산성 향상과 악취민원 해소에 도움

□ 사업비 산출내역

(단위 : 천원)

사업명	통계목	사업내용 및 산출내역(자세하게 작성)	비고
양돈경쟁력 강화사업	402-02 민간자본사업보조 (이전재원)	·자돈인큐베이터 5대*20,000천원*50%	= 50,000
		·우레탄단열 5대*6,000천원*50%	= 15,000
		·안개분무기 3대*10,000천원*50%	= 15,000
			=
			당초 환경개선 시범사업 전액감액

□ 사업 추진계획

○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

- 당초 본예산으로 편성된 환경개선시범사업(보조금 25,000천원)의 수요조사 결과 신청자 부재로 인한 예산 전액 감액

□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결산현황

○ 최근3년 추진실적

구분	주요사업내용(추진실적)	비고
2016년	예 산 액: 59,000천원 사 업 량: 인큐베이터 2개소, 우레탄단열 7개소 집 행 액: 57,182천원	
2017년	예 산 액: 20,000천원 사 업 량: 인큐베이터 1개소, 안개분무기 2개소 집 행 액: 19,091천원	
2018년	예 산 액: 80,000천원 사 업 량: 인큐베이터 5개소, 우레탄단열 5개소, 안개분무기 3개소 사업 진행중	

○ 최근3년 결산현황

(단위 : 천원)

연도	최종예산액	집행액	이월액	불용액	비고
2016년	59,000	57,182	0	1,818	
2017년	20,000	19,091	0	909	
2018년	80,000	80,000	0	0	

□ 사업부서 및 담당자

부서명	축수산과	축산팀장 송진현	담당자	행정9급 임성민	전화	2821
-----	------	----------	-----	----------	----	------

(수산 IT융합 모델화 사업) [P - 104]

□ 사업개요

- 사업기간 : 2018년 12월 ~ 2019년 11월 ○ 위 치 : 김포시 관내
- 사업규모 : 수산 u-IT융합 시설 1개소
-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 : 수산업 분야에 u-IT융복합기술 적용으로 어업생산성 향상 및 경쟁성 제고
- 예산확보 실적 및 향후계획

(단위 : 천원)

구 분	총사업비 (A+B+F)	2017년 예산액(까지) (A)	2018년 예산액			2017년 예산 대비 증감 (B-A)	향후투자 (F)	비고
			계 (B=C+D+E)	본예산 (C)	1~3회 추경 (D)			
계	600,000		600,000			600,000		
국 비	240,000		240,000			240,000		
도 비	90,000		90,000			90,000		
시 비	90,000		90,000			90,000		
기 타	180,000		180,000			180,000		자부담

□ 법적근거

근거법령	수산업·어촌 발전 기본법	제41조제2항
근거내용	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수산업 및 어촌지역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자 등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.	

□ 사업성격 및 사전절차 이행여부

사업성격		사전절차 이행여부						
신규■	계속□	중기지방 재정계획	투자심사	공유재산 관리계획	학술용역비 사전심사	정보화사업 사전협의	민간위탁 의회동의	출연·출자 의회의결
경상□	자본■	비대상	비대상	비대상	비대상	비대상	비대상	비대상
자체□	보조■	-	-	-	-	-	-	-

□ 예산요구 필요성 및 사업내용

- 수산업 분야에 u-IT융복합기술 적용으로 어업생산성 향상 및 경쟁성 제고
 - 양식장 환경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
 - 적정 용존산소 자동제어화 시스템
 - 최종 배출수 정화 및 살균을 통한 재활용화 시스템
 - 센서기술 활용 어류 선별 계측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

□ 사업비 산출내역

(단위 : 천원)

사업명	통계목	사업내용 및 산출내역(자세하게 작성)	비고
수산 U-IT융합 모델화 사업	402-02 민간자본사업보조 (이전재원)	- 양식장 환경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 - 적정 용존산소 자동제어화 시스템 - 최종 배출수 정화 및 살균을 통한 재활용화 - 센서기술 활용 어류 선별 계측 모니터링 수산 u-IT융합시스템 : 600,000,000원*1개소*70%	= 420,000

□ 사업 추진계획

○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

- 2018.06~2018.08 : 해양수산부 2차 추가공모 및 선정, 보조금 신청
- 2018.10~2018.11 : 해양수산부 보조금 지급(경기도)
- 2018.11~2018.12 : 경기도 2회(마무리) 추경
- 2018.12~2019.10 : 사업집행
- 2019.10~2019.11 : 결과보고 및 평가

□ 사업부서 및 담당자

부서명	축수산과	수산팀장 박문우	담당자	해양수산9급 박성원	전화	2824
-----	------	----------	-----	------------	----	------

